

의정부지방법원 2016. 8. 26 선고 2015가단12569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피 고 F

변론 종결 2016. 7. 22.

판결 선고 2016. 8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

가. 구리시 G 임야 3,721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59㎡ 지상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11 내지 14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5㎡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,

나. 위 각 건물의 부지를 인도하라.

2.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가.항.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리시 G 임야 3,721㎡를 인도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구리시 G 임야 3,721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1964. 2. 10.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, 2006. 1. 19.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.

나.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59㎡ 지상 및 같은 도면 표시 11 내지 14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5㎡ 지상에는 건물(이하 '이 사건 각 건물'이라 한다)이 존재하는바,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1996. 10. 5.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, 2009. 3. 26.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, 2010. 5. 12.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, 2012. 12. 26.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.

다. 원고들의 아버지 H은 처남 L 및 L의 아내 I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, 감정인 M의 감정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H이 L 및 I 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은 민법상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, 사용대차에 있어서 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에 관한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대주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(대법원1999. 5. 11. 선고 98다61746 판결 등 참조),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H 또는 원고들의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피고는 '대한민국 또는 H이 L 및 I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단 무상사용을 승낙한 이상 L 및 I의

특정승계인들은 당연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다.'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이는 피고의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).

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,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를 인도하여야 한다(원고들은,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인도를 구하나,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 외에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).

3. 결론

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한재상

(별지)

도 면

토지소재지 : 구리시

임

변경 표시

영역	영향
	건물외벽선

면적 표시

지번 부호	면적(㎡)	
	56	(건물)
	5	(건물)